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77
----------	------

발의연월일 : 2017. 4. 10.

발의자 : 황주홍 · 김종회 · 강창일

주승용 · 이동섭 · 김광수

이찬열 · 이종걸 · 정인화

유성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산 목재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건축재 등에는 대부분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우선구매) (생 략)  <u>&lt;신 설&gt;</u>	제19조(우선구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의 장은 목재 또는 목재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 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 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